

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소 방 위 박 재 호
 ■ 확인자 : 소 방 경 이 문 성

박재호
이문성

| 소방서(부서명) | 제조사 | 제조일 | 용기번호 | 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빙고119안전센터 | INOCOM | 2016. 4. | 1583KM202 | 2021.8.12. 안전도 검사후 충전 |

| 근거규정 (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. 별표 7. 호흡보호장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) | 점검항목 | 점검결과 | 비 고 (사유 등) |
|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7호 가항 4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 | 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6개월마다(21.3.9./청 지침) 새로운 공기로 교체 | (적) / 부 | |
| 7호 가항 6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 | 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 | (적) / 부 | |
| 7호 가항 7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 | 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 | (적) / 부 | |
| 8호 가항 (정기검사 등) | 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 | (적) / 부 | |
| 8호 다항. 3) (정기검사 등) | 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 | (적) / 부 | |
| 9호 나항 및 다항 (용기 등의 파기) | 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 | (적) / 부 | |
| 11호 가항 4) (정비실의 설치) | 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 | (적) / 부 | |
|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 | 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 | (적) / 부 | |

※ 공기호흡기 용기 체크리스트는 본부에서 표본 점검(20개) 후 작성 보관
 ※ 확인자는 해당 부서의 장(센터장·구조대장 등)

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소방위 박재호
 ■ 확인자 : 소방경 이문성

박재호
 이문성

| 소방서(부서명) | 제조사 | 제조일 | 용기번호 | 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빙고119안전센터 | SCI | 2011. 5. | ALT841-51215 | 2021.8.12. 안전도 검사후 충전 |

| 근거규정 (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. 별표 7. 호흡보호장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) | 점검항목 | 점검결과 | 비고 (사유 등) |
|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7호 가항 4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 | 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6개월마다(21.3.9./청 지침) 새로운 공기로 교체 | (적) / 부 | |
| 7호 가항 6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 | 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 | (적) / 부 | |
| 7호 가항 7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 | 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 | (적) / 부 | |
| 8호 가항 (정기검사 등) | 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 | (적) / 부 | |
| 8호 다항. 3) (정기검사 등) | 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 | (적) / 부 | |
| 9호 나항 및 다항 (용기 등의 파기) | 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 | (적) / 부 | |
| 11호 가항 4) (정비실의 설치) | 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 | (적) / 부 | |
|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 | 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 | (적) / 부 | |

※ 공기호흡기 용기 체크리스트는 본부에서 표본 점검(20개) 후 작성 보관
 ※ 확인자는 해당 부서의 장(센터장·구조대장 등)